

해 양 경 찰 청 소 속 경 찰 공 무 원
임 용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해 양 경 찰 청 (교육 훈련 담당관)
연 월 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개정이유

「해양경찰법」 개정 사항에 「해양경찰 수사부서의 장」 임용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으로 임용(채용)에 관한 절차가 진행 될 수 있도록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「해양경찰법」 개정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 경력경쟁채용시험 방법 등 관련내용 신설(안 제28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. 14. ~ 1. 21.)

3) 행정규제 : 해당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2(수사부서의 장 경력경쟁채용시험 등) ① 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의 방법·시기·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.

② 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.

1. 서류심사

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응시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,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합격으로 결정한다. 다만,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7명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.

2. 신체검사

약물검사 및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른 신체검사서의 결과로 갈음한다.

3. 종합심사

직무수행능력, 적격성 및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3명 이하의 임용후보자를 결정한다.

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서류심사위원회 및 수사부서의 장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를 두며,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위원의 자격 등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.

④ 수사부서의 장 경력경쟁채용시험에는 제1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8조의2(수사부서의 장 경력경쟁 채용시험 등) ① 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 경력경쟁 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의 방법·시기·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.</u> <u>② 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.</u> <u>1. 서류심사</u> <u>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응시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,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합격으로 결정한다. 다만,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7명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.</u> <u>2. 신체검사</u> <u>약물검사 및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른 신체</u>

검사서의 결과로 같음한다.

3. 종합심사

직무수행능력, 적격성 및 공
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
여 3명 이하의 임용후보자를
결정한다.

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
시험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서류
심사위원회 및 수사부서의 장
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를
두며,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
위원의 자격 등은 해양경찰청장
이 정한다.

④ 수사부서의 장 경력경쟁채용
시험에는 제16조제1항 및 제29
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.